

의안번호	제 9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12월 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4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2월 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“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 제9조(기금의 존속기한)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며
-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채상환기금의 상환실적이 미미하고 (12억원, 2011.11월), 적립성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 (‘13년말 조성액 46백만원)하며, 지방채의 상환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해당 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